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 주요내용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이규민 분석관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경과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 경과

- 정부는 2024년 5월 31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
 - ※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과 함께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심사하였으며, 이하에서는 편의상 '결산'에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설명함

[표 1]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 경과

구분	일자
정부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2024. 5. 31.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원회 : 2024.8.13. ~ 9.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9.2.
결산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원회 : 2024.8.26. ~ 9.2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11.29. • 본회의 : 2024.12.2.

주: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함께 심사하였음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시정요구 사항 (총괄)

시정요구 사항(총 2,319건)

-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총 2,319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
 -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2,293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26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2022회계연도 결산 대비 403건 증가(+21.0%))
 - 2023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34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 대비 8건 증가하였으며 감사요구는 없음

[표 2] 2021~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와 부대의견 및 감사요구 건수

(단위: 건)

구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시정요구	1,416	1,916	2,319
부대의견	21	26	34
감사요구	0	1	0

주: 시정요구 건수는 정보위원회 심사결과 제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포함

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유형별로는 제도개선 1,330건, 주의 808건, 시정 248건, 징계 1건¹⁾(중복 68건)
 - 이 중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는 시정 4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7건

1)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비 전용을 통한 고위직 채용, 유관 업체에 대한 부당한 요구 등 방만한 기관 운영사례를 점검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의결



[표 3]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의 결과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상임위원회	시정요구 유형						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국회운영	-	-	2	6	36	-	44
법제사법	-	-	18	44	114	3	173
정 무	-	-	15	100	131	3	243
기획재정	-	-	18	53	99	3	167
교 육	-	-	6	40	56	3	9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	24	64	62	1	149
외교통일	-	-	20	40	46	3	103
국 방	-	-	22	30	61	-	113
행정안전	-	-	11	38	53	4	98
문화체육관광	-	1	16	63	68	7	14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	10	52	152	2	2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	10	73	81	11	153
보건복지	-	-	-	49	164	8	205
환경노동	-	-	26	75	97	8	190
국토교통	-	-	43	65	68	9	167
여성가족	-	-	7	9	34	2	48
공 통	-	-	-	7	8	1	14
합 계	-	1	248	808	1,330	68	2,319

주: 1.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유형이 적용된 경우를 의미(예: 시정 및 제도개선)

2.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31건) 및 부대의견(1건) 별도

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4]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 결과 상임위원회별 주요 시정요구 사항

상임위원회	시정요구 사항	유형
국회운영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예비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시정
법제사법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진료 및 처방 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항정신성의약품의 처방·복용 건수에 대해 교정시설별로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정무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은 회수재원 재출자와 관련하여 재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국고 반환이 어려운 이유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며, 회수재원 규모와 활용방안, 재투자 분야, 재정모펀드의 성과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조치를 할 것	제도개선
기획재정	기획재정부는 국제감면을 법정한도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제감면을 법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주의
교육	교육부는 향후 보통교부금의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는 재원의 증감액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청별 배분 과정에서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정부 R&D 예산의 대규모 삭감에 따른 연구현장의 혼란과 과제 중단에 따른 매출비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연구개발비 감액으로 연구개발목표가 하향 조정된 과제들에 대한 성과분석 및 관리를 면밀히 수행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다수 조정대상 과제의 연구비 및 성과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주의
외교통일	외교부는 국제기구 분담금 자체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분담금 납부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국방	국방부는 초급간부 등 장교·부사관에 대한 선호도 제고 및 원활한 충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제도개선
행정안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이 저조한 사유를 점검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금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제도개선

상임위원회	시정요구 사항	유형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공모 감소 원인 분석을 통해 사업을 보완하고, 센터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매입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항기관인 농협경제지주의 자본부담이나 채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제도개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의 해외 유전지분 매입 시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한국석유공사의 역할을 고려하여 민간 기업과 차별화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보건복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전문의 양성에 관한 국가의 책임성을 고려하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환경노동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사건의 장기 심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우선심사 등 장기 심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작성하고 적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국토교통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절차 완화 및 실효성 있는 매입 수단 모색 등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
여성가족	여성가족부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히 객관적으로 추진할 것	주의
공통사항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정의·요건·절차 등을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시정요구 사항 (세수결손 관련)

- 2023년 56.4조원의 국제수입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는 세수결손 발생사유, 정부의 대응방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시정요구를 채택

【표 5】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 결과 주요 시정요구 사항(세수결손 관련)

소관부처	시정요구 사항	유형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추경예산안 편성 등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시정
	기획재정부는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등을 통한 추계모형 고도화, 국내외 주요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수오차 문제를 개선할 것	주의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등을 감안,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핵심사업들과 지자체 교육·복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정할 것	시정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안 제출 이후 경제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제위기 등으로 당초 전망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할 것	시정
	기획재정부는 세수결손 대응 시 미래의 재정부담과 국제상황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을 지양하고 적자 채무 증가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이자 유예를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	시정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여건,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기상환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주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3년과 같이 국제수입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미교부(불용)하고, 그 규모를 임의로 결정하는 집행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시정
교육부	교육부는 향후 세수결손 등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여 당해연도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	시정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체국 보험적립금 차입을 가급적 지양하고, 2023년 정보통신기금의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금을 '기타민간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비목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주의

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부대의견

▪ 부대의견(총 34건)

- 국회는 정부가 주택공급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부동산PF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안 편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총 3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표 6]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주요 부대의견

연번	부대의견
2	정부는 각종 펀드출자 사업의 연말기준 실제 투자완료금액과 미투자금액을 매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명시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펀드출자 사업의 미투자금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안을 편성하며, 당해 회계연도에 청산된 펀드의 운용실적과 성과를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8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PF의 연착륙에서 나아가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PF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10	법무부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12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이 완료되면 예산 요구액의 합계 및 분야별 요구액 현황 등의 정보를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한다.

주: '연번'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상의 부대의견 순서를 의미
 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고려사항

▪ 예산안 심의 시 결산 심의 결과 반영 필요

-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예산안 심의 시 반영하여 결산 심의 결과와 예산안의 심의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가 상임위원회의 결산 예비심사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 지연, 추계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조정을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이 총 275건인 것으로 분석*
 - *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당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이 의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의 결산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표 7] 2023회계연도 상임위 결산 예비심사에 따른 예산안 조정 관련 시정요구 사항

구분	건수
집행 지연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안 편성을 요구	75
예산안 추계의 문제를 고려하여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요구	97
저조한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예산안 조정을 요구	14
관련 법령 미비·부족,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 및 기타 사유로 예산안 조정을 요구	89
합계	2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 아울러 결산 심의 결과와 차년도 예산안 편성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결산 심의·의결이 보다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
- 「국회법」은 정기회 개회 전까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규정²⁾하고 있으나 연례적으로 정기회 개회 이후 결산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2)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